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년 10월 2일

나. 제출자: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2025년 10월 2일

라. 상정일자: 2025년 10월 17일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사회복지국장 황 은 채

나. 제안이유

- 2016. 9. 28. 개관 이후 구미도시공사에 위탁 운영 중인 구미시추모공원의 위탁기간이 2025. 12. 31.에 종료됨.
- 화장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구미도시공사와의 위·수탁협약 기간을 갱신하여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선진 장사문화 정착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장례문화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사 무 명 :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 추진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의2

○ 위탁사무 :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전반

- 구미시추모공원 운영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관리
- 각종 시설 안전관리 및 수익시설 운영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구미시추모공원
- 위 치 : 구미시 옥성면 추모공원로 81
- 개 관 일 : 2016. 9. 28.

• 시설규모

구분	내용
규모	부지면적 : 137,821㎡ (화장시설 111,854㎡, 도로 25,967㎡) 대지면적 : 32,691㎡ / 건축면적: 4,323.89㎡ 연면적 : 7,397㎡ / 조경면적: 8,478.5㎡ / 진입도로 : 805m 주차장 : 126면
화장로	7기 설치(8기 규모)
유택동산 (산골시설)	지하1층 35.41㎡ / 지상1층 42.32㎡
시설현황	지상3층 : 옥상정원, 태양광발전시설 등 지상2층 : 유족대기실(7), 식당, 매점, 카페테리아 지상1층 : 고별실(3), 수골실(2), 용품점, 접수실, 사무실 지하1층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야외 : LPG저장고, 오폐수처리시설, 재활용품처리장

○ 위탁기간 : 위탁기간 : 2026. 1. 1. ~ 2030. 12. 31. (5년)

※ 2016. 8. 10. ~ 2025. 12. 31. (구미도시공사 위탁 운영)

○ 소요예산 : 2,477,499천원 * 2026년도 예산

(단위 : 천원)

계	인건비	시설운영비	지원부서분담금
2,477,499	958,420	1,195,927	323,152

○ 수탁자 선정방식 : 구미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에 의함

○ 적정성 검토결과 : 가결

※ 2025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기존 수행기관 운영 현황

(1) 운영실적

(’25. 8. 31. 기준, 단위 : 건)

구분	계	일반시신		사산아	개장 유골	비고
		만15세 이상	만15세 미만			
계	34,466	26,776	158	122	7,410	
2025년	3,991	2,871	10	23	1,087	일평균 16.4
2024년	4,223	3,760	18	12	433	일평균 11.6
2023년	4,502	3,323	16	5	1,158	일평균 12.3
2022년	4,638	3,938	17	7	676	일평균 12.8
2021년	3,820	3,210	10	17	583	일평균 10.5
2020년	4,192	3,079	14	9	1,090	일평균 11.5
2019년	2,790	2,327	16	16	431	일평균 7.7
2018년	2,620	2,186	25	11	398	일평균 7.2
2017년	3,106	1,794	28	19	1,265	일평균 8.6
2016년 (9.28 ~ 12.31)	584	288	4	3	289	일평균 6.2

(2) 수입실적(사용료 수입)

(’25. 8. 31.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계	980,030	1,067,820	1,040,140	1,148,025	980,470	999,470	591,080
화장료	979,170	1,066,740	1,039,130	1,147,320	979,310	998,380	590,210
유택동산	860	1,080	1,010	705	1,160	1,090	870

※ 누적 수입료 : 7,896,745천원 (화장료 : 7,885,610천원, 유택
동산 : 11,135천원)

○ 부서 의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설 화장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하나 장사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탁 추진이 적절함.
- 구미도시공사는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장례지도사와 전기, 기계, 대기 환경 등 화장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기술적 인력을 바탕으로 개관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탁 사무 전반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기업법에 따른 경영평가를 매년 시행하여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확보가 용이하므로 구미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 기간을 갱신하여 구미시추모공원 운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라.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의2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영 훈

○ 본 동의안은

- 추모공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화장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구미도시공사와의 위·수탁협약 기간을 갱신하여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 고령화 심화에 따라 장례·추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고, 장례문화는 사회적 공공재 성격이 강해 수익성보다 공공성·형평성이 우선되어야 함.
- 향후 추모공원은 단순한 장사시설을 넘어 지역복지 인프라로서 유족 편의시설 확충, 친환경 운영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 확대(추모행사·장례문화 교육 등)를 통해 단순 시설운영을 넘어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 또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 관리 및 재정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인건비·운영비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비한 수익 다각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 기존 사업과 관련한 동의안 제출 시 성과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

6. 소수의견의 요지: 생 략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